

# 신규( 갱신 / 변경 )거래신청서(교보문고보관용)

20 年 月 日 코드

결재	담당	팀장

상 호			연락처	TEL)		팀장
				FAX)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차장
				H.P )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과장
배본사			주요출간분야			
거래현황(현재)			거래현황(변경)			
과세여부	과세	비과세	과세여부	과세	비과세	대리
거래방식	위탁 / 한도	일시	거래방식	위탁 / 한도	일시	
공급률 (온/오프)	%	%	공급률 (온/오프)	%	%	
대금지불	정기지불	일시지불	대금지불	정기지불	일시지불	담당
지급조건	현금	현금	지급조건	현금	현금	
기타사항			기타사항			

\*한도설정기준 :

## 대금지급 조건 특약사항

정기지불 (교보문고)

1. 대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교보문고"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금 지급일이 금융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후 최초 영업일로 한다.)
2. 지불조건은 "공급자" 와 "교보문고"가 정하는 지불방식에 의한다.

구분	거래방식	지급시기	비고
정기지불	정기	익월10일	전월 판매분에 대한 대금
	한도	익월10일(예외적용가능)	총 장부잔액 - 한도 설정금액 = 정기지불 금액
일시지불	일시	수시	다량상품 공급 시

3.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급수량 및 단가에 따라서 "공급자" 와 "교보문고"는 상호 협의하여 대금지급 시기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후 별도(특약) 사항

(손실 및 잔액 지불 방식)

1. 장부잔액 지불 시 손실분에 대한 금액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잔액 지불은 거래종료 신청서 접수 후 외상매입 지급 결의서에 의하여 당월 70%, 익월 30%를 지불한다.

“공급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印) 연 락 처 : 02-2076-0335
------------------------------------	-----------------------------------------------------------------------------------------------

# 신규( 갱신 / 변경 )거래신청서(공급자보관용)

20    年    月    日

상 호			연락처	TEL)	
				FAX)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H.P )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배분사			주요출간분야		
거래현황(현재)			거래현황(변경)		
과세여부	과세	비과세	과세여부	과세	비과세
거래방식	위탁 / 한도	일시	거래방식	위탁 / 한도	일시
공급률 (온/오프)	%	%	공급률 (온/오프)	%	%
대금지불	정기지불	일시지불	대금지불	정기지불	일시지불
지급조건	현금	현금	지급조건	현금	현금
기타사항			기타사항		

\*한도설정기준:

## 대금지급 조건 특약사항

정기지불 (공급자)

1. 대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교보문고"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금 지급일이 금융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후 최초 영업일로 한다.)
2. 지불조건은 "공급자" 와 "교보문고"가 정하는 지불방식에 의한다.

구분	거래방식	지급시기	비고
정기지불	정기	익월10일	전월 판매분에 대한 대금
	한도	익월10일(예외적용가능)	총 장부잔액 - 한도 설정금액 = 정기지불 금액
일시지불	일시	수시	다량상품 공급 시

3.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급수량 및 단가에 따라서 "공급자" 와 "교보문고"는 상호 협의하여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후 별도(특약) 사항

(손실 및 잔액 지불 방식)

1. 장부잔액 지불 시 손실분에 대한 금액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잔액 지불은 거래종료 신청서 접수 후 외상매입 지급 결의서에 의하여 당월 70%, 익월 30%를 지불한다.

“공급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 印 )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 印 ) 연 락 처 : 02-2076-0335
------------------------------------	-------	-------------------------------------------------------------------------------------------------

# 거 래 약 정 서

상호)\_\_\_\_\_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라 한다)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도서 및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 적 】

본 거래약정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품 공급 및 판매에 있어서 당사자들간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용 어 정 의 】

본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상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제작, 발행, 유통하여 '교보문고'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상품을 말하며, 신상품의 기준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서 정한 출판일 기준 18개월 이하의 도서로 한다. 신상품의 기준은 동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다.
2. '시기 및 계절성 상품'이라 함은 학습지, 대학교재, 잡지 등과 같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가 집중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시기 및 계절성 상품의 범주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상호 협의하여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3.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이라 함은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 상품에 부여된 표준식별코드를 말한다.
4.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라 함은 web 기반의 S/W를 임대하는 서비스로서 고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전자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라 함은 공급자가 상품을 공급할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하여 발급, 전송된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6. '시장테스트 기간'이라 함은 '공급자'가 신상품을 '교보문고'에게 공급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7. '공급'이라 함은 '공급자'가 상품을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8. '반품'이라 함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별도 협의한 반품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급자'가 대상 상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말한다.
9. '교환'이라 함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별도 협의한 교환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급자'가 대상 상품을 수령하고 새로운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의처분'이라 함은 '교보문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급자'에게 반품 및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상품의 회수 및 반품을 지체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공급자'와 별도 협의 없이 '교보문고'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미리보기'라 함은 도서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모니터나 각종 디바이스를 통하여 실물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 내용의 일정부분을 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2. '협력사네트워크'라 함은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 관리를 위하여 '교보문고'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계약과 동시에 '교보문고'는 '공급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공급자'는 협력사네트워크의 해당 계정을 통해 상품 등록, 주문, 입하, 회송, 반품, 지불 등의 확인 및 절차에 따라 전자계약 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제 3 조 【 상품의 공급 】

1. '공급자'는 출판, 유통하는 모든 상품을 '교보문고'에게 공급한다.
2. '공급자'는 공급 수량에 관하여 '교보문고'의 주문 범위 내에서 상품을 공급한다.
3. '공급자'는 '교보문고'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4. '공급자'는 청소년유해도서 및 유해논란의 여지가 있는 간행물의 공급 시에는 해당 심의기관의 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고 후 청소년유해도서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보문고'에 서면으로 통보 후 '교보문고'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간행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률' 등에 따라 어린이 도서, 완구, 교구 등에 KC마크 및 주의사항 표시를 부착하여 상품을 공급해야 하고, 관계 법령상 의무를 미 이행함으로써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공급자'는 반품 또는 교환 사유 발생시,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일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 '교보문고'는 상품명, 수량 등에 대해 '공급자'와 협의한 양식에 의거해 주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보문고'가 주문한 상품을 신속히 공급해야 한다.
8. '공급자'는 공급의 거절, 변경 또는 그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의 주문서 접수 (또는 '교보문고'의 협력사네트워크 주문내역 공지, 이하 같다)일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보문고'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급자'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 '교보문고'의 주문 내용은 '공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주문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교보문고'가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주문서 접수일에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보문고'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10. '공급자'는 '교보문고'가 주문한 상품을 '교보문고'에게 공급함에 있어 그 수송 및 운임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제 4 조 【 공급 단위 및 방법 】

1. '공급자'는 신상품의 경우 '교보문고'와 별도 협의 없이 최대 10부까지 공급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와 이후 주문분에 대해서는 '교보문고'와 별도 협의하여 그 수량 및 공급 단가를 정한다.
2. 시장테스트 기간이 초과된 신상품 중 '공급자'가 '교보문고'의 영업장에서 계속 판매 및 진열할 것을 원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계속 판매 및 진열을 할 해당 상품의 수량 및 종수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별도로 '신상품(신간) 납품 및 추가진열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보문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구간 상품중 '공급자'가 '교보문고'의 영업장에서 광고 및 이벤트의 진행 등 기획 행사를 위하여 판매 및 진열할 것을 원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계속 판매 및 진열을 할 해당 상품의 수량 및 종수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별도로 '기획(행사)상품 납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보문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 5 조 【 거래 조건 】

1. 신규거래는 제6조 [대금지급]에서 명시한 지급조건으로 한다.
2. '공급자'가 '교보문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단가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 6 조 【 대금 지급 】

1. '교보문고'는 '교보문고'의 판매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대금지급일이 금융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후 최초 영업일로 한다.
2. 대금지급 조건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으로 결정한다.
3. 본 조항의 지급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급수량 및 단가에 따라서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상호 협의하여 대금지급 시기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대금수령액이 '공급자'의 내부자료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보문고'와 협의하여 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ASP서비스를 통하여 '교보문고'에게 접수하며, '공급자'가 계산서를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 지불금 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6.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협력사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산서 접수현황, 지불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공급자'는 매월 '협력사네트워크'를 통해 반품, 입하, 회송 등의 내역 및 장부잔액을 최종적으로 확인 해야 한다.
8. '공급자'는 매월 공급한 상품의 수량, 장부잔액 등이 '협력사네트워크'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상호 확인하여 거래내역을 수정 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거래내역(장부잔액등)의 불일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 2개월 이내로 '교보문고'에 재확인을 요청 할 수 있고, 동 기한 내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력사네트워크'상 거래내역(장부잔액등)이 진정한 거래내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 제 7 조 【 권리 및 의무 】

1. '공급자'는 상품에 ISBN(바코드)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2. 상품거래 확인은 '협력사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하며, 거래 내용의 오류 발견시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SP서비스로 발급 전송한다.  
단, 수기(세금)계산서는 '교보문고'의 동의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4. '공급자'가 제공한 상품 정보가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5.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사업장의 이전,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상의 변경이나 기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진다.

6. '공급자'가 전항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귀책으로 부득이하게 의사표시를 전달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보문고'가 변경 전 정보에 따라 의사표시 하여도 적법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8 조 【 반품, 교환, 회수 및 임의처분 】**

1. '교보문고'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교보문고'의 주문 내용과 상이한 상품을 '공급자'가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동 상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교보문고'에게 공급한 상품에 관하여 정가변경 또는 개정판 발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보문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한다.
3. '공급자'가 '교보문고'에 공급한 신상품은 '교보문고'의 영업장에서 시장테스트 기간 동안 진열 및 판매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공급자'에게 반품한다.
4. 상품추가진열요청서에 의해 '공급자'가 납품한 상품 중 동 요청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다.
5. '교보문고'는 시기 및 계절성 상품 중 판매 후 남은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품 할 수 있다.
6. '교보문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공급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동 상품의 반품처리를 지체하는 경우 '교보문고'가 이를 임의 처분하여도 '공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 9 조 【 거래의 해지 】**

1.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거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 ② 파산, 화의, 회생, 폐업 등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 ③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 집행을 당하거나 경매 신청을 당한 경우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최고하고,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6개월 이상 거래가 단절되었을 때
  - ② 본 약정의 제 조항을 위반, 불이행 하였을 때

#### **제 10 조 【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 후 처리 】**

1. 전조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총판 포함)'가 본 계약 외 업체(출판사 등)와 거래가 종료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거래종료의 시점은 '교보문고'의 반품 기간을 감안하여 '공급자' 또는 '교보문고'가 서면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로 한다. 단, 이 경우 거래 대금은 지급결의 서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70% 2개월 이내 30% 를 지급한다. (일시급(매절)은 제외)

#### **제 11 조 【 계약의 효력발생 】**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 제 12 조 【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거래당사자간으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해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3 조 【 판매촉진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1. '공급자'가 공급하는 출판물에 대한 '교보문고'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급자'가 공급하는 출판물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서정보(표지이미지, 목차, 저자약력, 머리말, 추천사, 일러두기 등)
  - ② '공급자'가 '교보문고'에게 '협력사네트워크',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한 도서정보(출판사 보도자료, 독자대상정보, 난이도, 검색주제어 등)
  - ③ '공급자'가 공급하는 출판물의 본문 중 일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및 홍보용)
  - ④ 기타 '교보문고'의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행위
2.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공급자'는 출판물의 저작자에게 '교보문고'의 저작물 이용의 사전승인을 책임 지고, '교보문고'는 이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4 조 【 관련 법규 및 거래질서 준수 】

1.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교보문고'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공급자'는 '교보문고'의 임직원이 제2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즉시 그 사실을 '교보문고'에게 통지한다.

## 제 15 조 【 기밀 유지 】

1.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정보 및 회사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쌍방의 합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지의 사실이거나, 일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 제 16 조 【 지연이자의 면제 】

1. '공급자'의 채권자가 '공급자'가 '교보문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공급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교보문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교보문고'의 지급이 지체 되더라도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 이자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 손해배상 】**

- 1. 당사자 일방이 도서 등의 상품과 관련해서 본 계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 분쟁의 조정 】**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통상 상거래 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 하여 지정한다.

**제 19 조 【 일반 조항 】**

- 1. 본 계약의 '별첨문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2. 본 계약에 대해 세부 사항이 필요한 경우 별첨문서로써 첨부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각 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印)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印)



<별첨>

## 보안유지 및 준수사항

각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상호 협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범위 및 역할을 정의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로써 충실히 이행한다.

1. ‘업체’라 함은 업무제휴(계약)을 위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교보문고’의 상대 당사자를 말함.
2. ‘교보문고’의 수행 범위
  -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정책 및 보안요구사항 제시
3. ‘업체’의 수행 범위
  - ‘교보문고’의 보안규정/세칙에 대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과도한 통제로 인해 업무의 지연 또는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보문고’에게 변경 또는 완화 요청 가능
  - 가) 출입통제
    - 교보문고 통제구역 출입 시 사전 승인 요청/출입통제 담당자의 통제 준수
  - 나) 인적보안
    - ‘교보문고’의 요청 시 협력업체/제3자 대상 교육참여 또는 동일 과정의 교육 수행 후 결과 제출
    - ‘교보문고’의 정기/수시 보안점검 또는 보안감사 시 적극 협조
    -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사용 단말기 반입/반출시 승인 요청
  - 다) 접근통제
    -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접근 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접근 시 ‘교보문고’로 부터 부여 받은 계정 및 권한 사용/용도 외 권한 오남용 금지
    - ‘교보문고’ 통신망을 이용한 외부 접근 및 접속 원칙적 금지
  - 라) 보안정책 준수
    - ‘교보문고’의 보안규정/세칙에 대한 협력업체/제3자 준수
  - 마) 정보 관리
    - ‘업체’는 업무처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 ‘업체’는 이용목적에 달성된 ‘교보문고’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는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결과에 대해 ‘교보문고’에게 알려야 한다.
4. 보안정책 및 보안요구사항 변경 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확정
5. ‘교보문고’의 책임과 의무
  - 가) 정기/수시 보안점검 또는 보안감사를 통하여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함. 단, 점검 및 감사 수행 전 ‘업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함.
  - 나) ‘업체’가 보안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보안수준 제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
6. ‘업체’의 책임과 의무
  - 가) ‘교보문고’의 보안규정/보안요구사항의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교보문고’의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동의 받아 하며, 재위탁 업체의 보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다) 기타 ‘교보문고’의 정보보호서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함.
  - 라) 필요 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한다(월/반기단위)
7. 공통의 책임과 의무
  - 기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양사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신상품(신간) 납품 및 상품 추가진열 요청서

상 호) \_\_\_\_\_ 공급자 대표 \_\_\_\_\_ 은(는) (주)교보문고와의 거래에 있어 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신상품(신간 : 18개월 이내)에 대하여 판매촉진과 홍보를 통한 매출이익을 높이고자 (주)교보문고와 입고물량, 마케팅, 홍보등 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여 공급한 신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상품을 납품하고 (주)교보문고의 전 영업점(인터넷 포함)에 일정기간 신상품의 시장테스트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상품 납품 후 당사(공급자)와 (주)교보문고와의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은 당 공급자의 매출 이익 외에 독자들의 구매동향 파악 및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서 당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시장테스트 기간이 경과 후 남은 도서에 대한 회수를 수용합니다.

단, 시장테스트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상품의 회수 진행시기는 시장테스트 기간 경과 후 반품합니다.

- \* 시장테스트 기간 내에 판매에 따라 추가되는 (주)교보문고의 주문 내역에 대하여 추가 납품 요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주)교보문고의 주문 방식에 의한 주문 수량을 납품합니다.
-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으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요청서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장테스트 기간(2개월) 경과 후에도 당 공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테스트 기간 연장 및 추가진열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요청 서류로 같음하며, 이의가 있을 시, 당 공급자에서 (주)교보문고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합니다.

○ 기 간 : 요청서 작성일로 부터 1년

○ 대 상 : 요청서 작성 기간 내 출간되어 입고 되는 모든 신상품(18개월 이내)

○ 수량 및 종수(당 공급자와 상호협의)

- (주)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전산 데이터에 의함(당 공급자에 편의를 제공함)

※ 당 공급자에서 매번 신상품 계약 체결 및 요청서 작성/제출이 불가한 관계로 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 불가한 사유

- 신간이 출간되면 (주)교보문고와만 거래되지 않고 대부분의 대형서점(인터넷 서점 포함) 등과  
동시 거래 및 영업 추진으로 영업 인력의 한계성으로 매 납품시 마다 방문 체결의 어려움 발생

20    년    월    일

<p>“공급자”</p> <p>상 호 : _____</p> <p>주 소 : _____</p> <p>대 표 자 : _____ (인)</p>	<p>“교보문고”</p> <p>상 호 : (주)교보문고</p> <p>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p> <p>대표이사 : 박 영 규 (인)</p>
-----------------------------------------------------------------------------	------------------------------------------------------------------------------------------

## 기획(행사)상품 납품 요청서

상 호) \_\_\_\_\_ 공급자 대표 \_\_\_\_\_ 은(는) (주)교보문고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구간상품(18개월 이상)에 대한 광고, 행사 및 기획 이벤트를 기획하여 (주)교보문고의 \_\_\_\_\_ (교보문고 인터넷 포함)점을 통하여 상품 진열을 함으로서 매출 및 홍보 효과를 높이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해당 상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주)교보문고를 통하여 기획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충분히 기여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기간이 경과하고 남은 상품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반품을 실시합니다.**

- \* 행사 기간 중 해당 행사 상품의 추가 주문수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납품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교보문고의 주문방식에 의한 주문 요청 수량을 납품합니다.
- \* 행사에 참여하여 진열을 요하는 상품은 교보문고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영업점을 포함하며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행사 요청 시 영업점 별로 사전 협의 후 행사 영업점을 별도로 기재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으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요청서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사 상품의 수량 및 종수(당 공급자와 상호협의)는 (주)교보문고에서 당 공급자에 편의 제공 및 신뢰성 있는 전산 데이터 자료에 의함
  - 행사 목록은 별도의 양식으로 첨부

○ 대상기간 : 요청서 작성일로 부터 1년

○ 대 상 : 요청서 작성 기간 내 (주)교보문고에 입고 되는 모든 상품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印)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印)
----------------------------------------------------------	-----------------------------------------------------------------------

#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

**상호** \_\_\_\_\_ **공급자(이하"공급자"라한다)와 주식회사 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라한다)는 납품하는 재화 및 용역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1. "공급자"가 "교보문고"에 청구할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이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약정서는 "교보문고"와 "공급자"가 체결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금융기관과의 가맹점약정 체결 및 등록)**

1. "공급자"는 "교보문고"로부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교보문고"와 거래대금 지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과 전자결제 가맹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대금 지급일 7일전까지 "교보문고"에 제출한다.
2. "공급자"는 1항에 의하여 "교보문고"와 "금융기관"에게 제출한 제반서류상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교보문고"와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변경 사항을 각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3 조 (거래대금의 지급방식)**

- "교보문고"가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각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별도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른다.
1. 전자결제에 의한 지급
    - 1)"교보문고"는 "공급자"와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을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금융기관"에게 지급위탁(전자어음, 구매카드, 외상매출당보대출 방식 등)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전항에 의거 "교보문고"는 대금지급액, 결제일 등이 명기된 지급대금명세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거래대금의 지급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2. 현금지급
 

"교보문고"는 "공급자"와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등록한 수금용 결제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기타지급
 

"공급자"가 전조의 전자결제 가맹점 약정이 불가한 예외적 경우에만 한하여, "교보문고"는 "공급자"에게 협조공문을 받은 후 거래대금을 만기 도래 시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조 (착오로 인한 초과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교보문고"가 거래대금을 착오로 초과 입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보문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환해야 하며, "교보문고"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이에 따른다.

**제 5 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교보문고"에게 "공급자"의 만기가 도래한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불한 거래대금(채무)과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상계할 경우 "공급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 6 조 (대금지급의 보류)**

"교보문고"는 "공급자"가 본 약정서에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자"의 신고내용이 변경된 후 즉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7 조 (위험부담의 면책)**

1. "교보문고"는 제3조 1항에 의거 "금융기관"에게 지급위탁에 대한 지급대금명세를 발송하는 시점에 "공급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이행 제공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 발생하는 "공급자"와 "금융기관"과의 모든 사고에 대해 "교보문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2. "교보문고"는 제2조에 의해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등에 대한 변경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기존에 통지된 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교보문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조항을 "교보문고"와 "공급자"는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쌍방이 합의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예금주 법인사업자-법인명의, 개인사업자-대표자명의 상호계좌 (개인사업자 대표자명의 단독 표기 통장불가)**

**〈 대금지급용 계좌정보 및 업체정보 〉**

<b>상 호</b>		<b>대 표 자</b>	
<b>사업자등록번호</b>		<b>전 화 번 호</b>	
<b>사 업 장 주 소</b>		<b>이 메 일 주 소</b>	
<b>입금 계좌 정보</b>	<b>은행 :</b> _____ <b>예금주 :</b> _____	<b>담당자 성명</b>	
<b>계 좌 번 호</b>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인)
----------------------------------------------------------------------------	-----------------------------------------------------------------------

# 거 래 약 정 서

상호)\_\_\_\_\_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라 한다)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도서 및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 적 】

본 거래약정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품 공급 및 판매에 있어서 당사자들간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용 어 정 의 】

본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상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제작, 발행, 유통하여 '교보문고'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상품을 말하며, 신상품의 기준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서 정한 출판일 기준 18개월 이하의 도서로 한다. 신상품의 기준은 동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다.
2. '시기 및 계절성 상품'이라 함은 학습지, 대학교재, 잡지 등과 같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가 집중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시기 및 계절성 상품의 범주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상호 협의하여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3.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이라 함은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 상품에 부여된 표준식별코드를 말한다.
4.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라 함은 web 기반의 S/W를 임대하는 서비스로서 고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전자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라 함은 공급자가 상품을 공급할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하여 발급, 전송된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6. '시장테스트 기간'이라 함은 '공급자'가 신상품을 '교보문고'에게 공급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7. '공급'이라 함은 '공급자'가 상품을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8. '반품'이라 함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별도 협의한 반품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급자'가 대상 상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말한다.
9. '교환'이라 함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별도 협의한 교환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급자'가 대상 상품을 수령하고 새로운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의처분'이라 함은 '교보문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급자'에게 반품 및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상품의 회수 및 반품을 지체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공급자'와 별도 협의 없이 '교보문고'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미리보기'라 함은 도서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모니터나 각종 디바이스를 통하여 실물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 내용의 일정부분을 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2. '협력사네트워크'라 함은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 관리를 위하여 '교보문고'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계약과 동시에 '교보문고'는 '공급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공급자'는 협력사네트워크의 해당 계정을 통해 상품 등록, 주문, 입하, 회송, 반품, 지불 등의 확인 및 절차에 따라 전자계약 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제 3 조 【 상품의 공급 】

1. '공급자'는 출판, 유통하는 모든 상품을 '교보문고'에게 공급한다.
2. '공급자'는 공급 수량에 관하여 '교보문고'의 주문 범위 내에서 상품을 공급한다.
3. '공급자'는 '교보문고'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4. '공급자'는 청소년유해도서 및 유해논란의 여지가 있는 간행물의 공급 시에는 해당 심의기관의 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고 후 청소년유해도서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보문고'에 서면으로 통보 후 '교보문고'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간행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률' 등에 따라 어린이 도서, 완구, 교구 등에 KC마크 및 주의사항 표시를 부착하여 상품을 공급해야 하고, 관계 법령상 의무를 미 이행함으로써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공급자'는 반품 또는 교환 사유 발생시, '교보문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일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 '교보문고'는 상품명, 수량 등에 대해 '공급자'와 협의한 양식에 의거해 주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보문고'가 주문한 상품을 신속히 공급해야 한다.
8. '공급자'는 공급의 거절, 변경 또는 그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의 주문서 접수 (또는 '교보문고'의 협력사네트워크 주문내역 공지, 이하 같다)일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보문고'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급자'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 '교보문고'의 주문 내용은 '공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주문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교보문고'가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주문서 접수일에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보문고'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10. '공급자'는 '교보문고'가 주문한 상품을 '교보문고'에게 공급함에 있어 그 수송 및 운임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제 4 조 【 공급 단위 및 방법 】

1. '공급자'는 신상품의 경우 '교보문고'와 별도 협의 없이 최대 10부까지 공급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와 이후 주문분에 대해서는 '교보문고'와 별도 협의하여 그 수량 및 공급 단가를 정한다.
2. 시장테스트 기간이 초과된 신상품 중 '공급자'가 '교보문고'의 영업장에서 계속 판매 및 진열할 것을 원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계속 판매 및 진열을 할 해당 상품의 수량 및 종수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별도로 '신상품(신간) 납품 및 추가진열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보문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구간 상품중 '공급자'가 '교보문고'의 영업장에서 광고 및 이벤트의 진행 등 기획 행사를 위하여 판매 및 진열할 것을 원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계속 판매 및 진열을 할 해당 상품의 수량 및 종수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별도로 '기획(행사)상품 납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보문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 5 조 【 거래 조건 】

1. 신규거래는 제6조 [대금지급]에서 명시한 지급조건으로 한다.
2. '공급자'가 '교보문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단가는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 6 조 【 대금 지급 】

1. '교보문고'는 '교보문고'의 판매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대금지급일이 금융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후 최초 영업일로 한다.
2. 대금지급 조건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으로 결정한다.
3. 본 조항의 지급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급수량 및 단가에 따라서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상호 협의하여 대금지급 시기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대금수령액이 '공급자'의 내부자료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보문고'와 협의하여 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ASP서비스를 통하여 '교보문고'에게 접수하며, '공급자'가 계산서를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 지불금 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6.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협력사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산서 접수현황, 지불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공급자'는 매월 '협력사네트워크'를 통해 반품, 입하, 회송 등의 내역 및 장부잔액을 최종적으로 확인 해야 한다.
8. '공급자'는 매월 공급한 상품의 수량, 장부잔액 등이 '협력사네트워크'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상호 확인하여 거래내역을 수정 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거래내역(장부잔액등)의 불일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 2개월 이내로 '교보문고'에 재확인을 요청 할 수 있고, 동 기한 내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력사네트워크'상 거래내역(장부잔액등)이 진정한 거래내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 제 7 조 【 권리 및 의무 】

1. '공급자'는 상품에 ISBN(바코드)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2. 상품거래 확인은 '협력사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하며, 거래 내용의 오류 발견시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SP서비스로 발급 전송한다.  
단, 수기(세금)계산서는 '교보문고'의 동의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4. '공급자'가 제공한 상품 정보가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5.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사업장의 이전,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상의 변경이나 기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진다.

6. '공급자'가 전항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귀책으로 부득이하게 의사표시를 전달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보문고'가 변경 전 정보에 따라 의사표시 하여도 적법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8 조 【 반품, 교환, 회수 및 임의처분 】**

1. '교보문고'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교보문고'의 주문 내용과 상이한 상품을 '공급자'가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동 상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교보문고'에게 공급한 상품에 관하여 정가변경 또는 개정판 발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보문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한다.
3. '공급자'가 '교보문고'에 공급한 신상품은 '교보문고'의 영업장에서 시장테스트 기간 동안 진열 및 판매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공급자'에게 반품한다.
4. 상품추가진열요청서에 의해 '공급자'가 납품한 상품 중 동 요청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다.
5. '교보문고'는 시기 및 계절성 상품 중 판매 후 남은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품 할 수 있다.
6. '교보문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공급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동 상품의 반품처리를 지체하는 경우 '교보문고'가 이를 임의 처분하여도 '공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 9 조 【 거래의 해지 】**

1.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거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 ② 파산, 화의, 회생, 폐업 등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 ③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 집행을 당하거나 경매 신청을 당한 경우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최고하고,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6개월 이상 거래가 단절되었을 때
  - ② 본 약정의 제 조항을 위반, 불이행 하였을 때

#### **제 10 조 【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 후 처리 】**

1. 전조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총판 포함)'가 본 계약 외 업체(출판사 등)와 거래가 종료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거래종료의 시점은 '교보문고'의 반품 기간을 감안하여 '공급자' 또는 '교보문고'가 서면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로 한다. 단, 이 경우 거래 대금은 지급결의 서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70% 2개월 이내 30% 를 지급한다. (일시급(매절)은 제외)

#### **제 11 조 【 계약의 효력발생 】**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 제 12 조 【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거래당사자간으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해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3 조 【 판매촉진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1. '공급자'가 공급하는 출판물에 대한 '교보문고'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급자'가 공급하는 출판물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서정보(표지이미지, 목차, 저자약력, 머리말, 추천사, 일러두기 등)
  - ② '공급자'가 '교보문고'에게 '협력사네트워크',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한 도서정보(출판사 보도자료, 독자대상정보, 난이도, 검색주제어 등)
  - ③ '공급자'가 공급하는 출판물의 본문 중 일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및 홍보용)
  - ④ 기타 '교보문고'의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행위
2.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공급자'는 출판물의 저작자에게 '교보문고'의 저작물 이용의 사전승인을 책임 지고, '교보문고'는 이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4 조 【 관련 법규 및 거래질서 준수 】

1.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교보문고'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공급자'는 '교보문고'의 임직원이 제2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즉시 그 사실을 '교보문고'에게 통지한다.

## 제 15 조 【 기밀 유지 】

1. '공급자'와 '교보문고'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정보 및 회사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쌍방의 합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지의 사실이거나, 일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 제 16 조 【 지연이자의 면제 】

1. '공급자'의 채권자가 '공급자'가 '교보문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공급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교보문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교보문고'의 지급이 지체 되더라도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 이자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 손해배상 】**

- 1. 당사자 일방이 도서 등의 상품과 관련하여 본 계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 분쟁의 조정 】**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통상 상거래 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협의 하여 지정한다.

**제 19 조 【 일반 조항 】**

- 1. 본 계약의 '별첨문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2. 본 계약에 대해 세부 사항이 필요한 경우 별첨문서로써 첨부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공급자'와 '교보문고'가 각 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印)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印)

<별첨>

## 보안유지 및 준수사항

각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상호 협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범위 및 역할을 정의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로써 충실히 이행한다.

1. ‘업체’라 함은 업무제휴(계약)을 위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교보문고’의 상대 당사자를 말함.
2. ‘교보문고’의 수행 범위
  -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정책 및 보안요구사항 제시
3. ‘업체’의 수행 범위
  - ‘교보문고’의 보안규정/세칙에 대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과도한 통제로 인해 업무의 지연 또는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보문고’에게 변경 또는 완화 요청 가능
  - 가) 출입통제
    - 교보문고 통제구역 출입 시 사전 승인 요청/출입통제 담당자의 통제 준수
  - 나) 인적보안
    - ‘교보문고’의 요청 시 협력업체/제3자 대상 교육참여 또는 동일 과정의 교육 수행 후 결과 제출
    - ‘교보문고’의 정기/수시 보안점검 또는 보안감사 시 적극 협조
    -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사용 단말기 반입/반출시 승인 요청
  - 다) 접근통제
    -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접근 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접근 시 ‘교보문고’로 부터 부여 받은 계정 및 권한 사용/용도 외 권한 오남용 금지
    - ‘교보문고’ 통신망을 이용한 외부 접근 및 접속 원칙적 금지
  - 라) 보안정책 준수
    - ‘교보문고’의 보안규정/세칙에 대한 협력업체/제3자 준수
  - 마) 정보 관리
    - ‘업체’는 업무처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 ‘업체’는 이용목적외 달성된 ‘교보문고’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는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결과에 대해 ‘교보문고’에게 알려야 한다.
4. 보안정책 및 보안요구사항 변경 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확정
5. ‘교보문고’의 책임과 의무
  - 가) 정기/수시 보안점검 또는 보안감사를 통하여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함. 단, 점검 및 감사 수행 전 ‘업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함.
  - 나) ‘업체’가 보안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보안수준 제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
6. ‘업체’의 책임과 의무
  - 가) ‘교보문고’의 보안규정/보안요구사항의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교보문고’의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동의 받아 하며, 재위탁 업체의 보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다) 기타 ‘교보문고’의 정보보호서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함.
  - 라) 필요 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한다(월/반기단위)
7. 공통의 책임과 의무
  - 기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양사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신상품(신간) 납품 및 상품 추가진열 요청서

상 호) \_\_\_\_\_ 공급자 대표 \_\_\_\_\_ 은(는) (주)교보문고와의 거래에 있어 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신상품(신간 : 18개월 이내)에 대하여 판매촉진과 홍보를 통한 매출이익을 높이고자 (주)교보문고와 입고물량, 마케팅, 홍보등 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여 공급한 신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상품을 납품하고 (주)교보문고의 전 영업점(인터넷 포함)에 일정기간 신상품의 시장테스트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상품 납품 후 당사(공급자)와 (주)교보문고와의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은 당 공급자의 매출 이익 외에 독자들의 구매동향 파악 및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서 당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시장테스트 기간이 경과 후 남은 도서에 대한 회수를 수용합니다.

단, 시장테스트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상품의 회수 진행시기는 시장테스트 기간 경과 후 반품합니다.

- \* 시장테스트 기간 내에 판매에 따라 추가되는 (주)교보문고의 주문 내역에 대하여 추가 납품 요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주)교보문고의 주문 방식에 의한 주문 수량을 납품합니다.
-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으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요청서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장테스트 기간(2개월) 경과 후에도 당 공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테스트 기간 연장 및 추가진열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요청 서류로 같음하며, 이의가 있을 시, 당 공급자에서 (주)교보문고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합니다.

- 기 간 : 요청서 작성일로 부터 1년
- 대 상 : 요청서 작성 기간 내 출간되어 입고 되는 모든 신상품(18개월 이내)
- 수량 및 종수(당 공급자와 상호협의)
  - (주)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전산 데이터에 의함(당 공급자에 편의를 제공함)

※ 당 공급자에서 매번 신상품 계약 체결 및 요청서 작성/제출이 불가한 관계로 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 불가한 사유**

- 신간이 출간되면 (주)교보문고와만 거래되지 않고 대부분의 대형서점(인터넷 서점 포함) 등과  
동시 거래 및 영업 추진으로 영업 인력의 한계성으로 매 납품시 마다 방문 체결의 어려움 발생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인)
----------------------------------------------------------	-----------------------------------------------------------------------

## 기획(행사)상품 납품 요청서

상 호) \_\_\_\_\_ 공급자 대표 \_\_\_\_\_ 은(는) (주)교보문고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구간상품(18개월 이상)에 대한 광고, 행사 및 기획 이벤트를 기획하여 (주)교보문고의 \_\_\_\_\_ (교보문고 인터넷 포함)점을 통하여 상품 진열을 함으로서 매출 및 홍보 효과를 높이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해당 상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주)교보문고를 통하여 기획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충분히 기여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기간이 경과하고 남은 상품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반품을 실시합니다.**

- \* 행사 기간 중 해당 행사 상품의 추가 주문수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납품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교보문고의 주문방식에 의한 주문 요청 수량을 납품합니다.
- \* 행사에 참여하여 진열을 요하는 상품은 교보문고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영업점을 포함하며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행사 요청 시 영업점 별로 사전 협의 후 행사 영업점을 별도로 기재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으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요청서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사 상품의 수량 및 종수(당 공급자와 상호협의)는 (주)교보문고에서 당 공급자에 편의 제공 및 신뢰성 있는 전산 데이터 자료에 의함
  - 행사 목록은 별도의 양식으로 첨부

○ 대상기간 : 요청서 작성일로 부터 1년

○ 대 상 : 요청서 작성 기간 내 (주)교보문고에 입고 되는 모든 상품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印)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印)
----------------------------------------	-----------------------------------------------------------------------

#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

**상호** \_\_\_\_\_ **공급자(이하"공급자"라한다)와 주식회사 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라한다)는 납품하는 재화 및 용역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3. "공급자"가 "교보문고"에 청구할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이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약정서는 "교보문고"와 "공급자"가 체결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금융기관과의 가맹점약정 체결 및 등록)**

4. "공급자"는 "교보문고"로부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교보문고"와 거래대금 지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과 전자결제 가맹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대금 지급일 7일전까지 "교보문고"에 제출한다.
2. "공급자"는 1항에 의하여 "교보문고"와 "금융기관"에게 제출한 제반서류상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교보문고"와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변경 사항을 각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3 조 (거래대금의 지급방식)**

- "교보문고"가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각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별도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른다.
1. 전자결제에 의한 지급
    - 1)"교보문고"는 "공급자"와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을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금융기관"에게 지급위탁(전자어음, 구매카드, 외상매출당보대출 방식 등)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전항에 의거 "교보문고"는 대금지급액, 결제일 등이 명기된 지급대금명세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거래대금의 지급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5. 현금지급
 "교보문고"는 "공급자"와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등록한 수금용 결제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 기타지급
 "공급자"가 전조의 전자결제 가맹점 약정이 불가한 예외적 경우에만 한하여, "교보문고"는 "공급자"에게 협조공문을 받은 후 거래대금을 만기 도래 시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조 (착오로 인한 초과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교보문고"가 거래대금을 착오로 초과 입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보문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환해야 하며, "교보문고"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이에 따른다.

**제 5 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교보문고"에게 "공급자"의 만기가 도래한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불한 거래대금(채무)과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상계할 경우 "공급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 6 조 (대금지급의 보류)**

"교보문고"는 "공급자"가 본 약정서에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자"의 신고내용이 변경된 후 즉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7 조 (위험부담의 면책)**

1. "교보문고"는 제3조 1항에 의거 "금융기관"에게 지급위탁에 대한 지급대금명세를 발송하는 시점에 "공급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이행 제공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 발생하는 "공급자"와 "금융기관"과의 모든 사고에 대해 "교보문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2. "교보문고"는 제2조에 의해 "공급자"의 수금용 은행계좌등에 대한 변경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는 기존에 통지된 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교보문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조항을 "교보문고"와 "공급자"는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쌍방이 합의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예금주 법인사업자-법인명의, 개인사업자-대표자명의 상호계좌 (개인사업자 대표자명의 단독 표기 통장불가)**

**《 대금지급용 계좌정보 및 업체정보 》**

<b>상 호</b>		<b>대 표 자</b>	
<b>사업자등록번호</b>		<b>전 화 번 호</b>	
<b>사 업 장 주 소</b>		<b>이 메 일 주 소</b>	
<b>입금 계좌 정보</b>	<b>은행 :</b> _____ <b>예금주 :</b> _____	<b>담당자 성명</b>	
<b>계 좌 번 호</b>			

20      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교보문고” 상 호 : (주)교보문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이사 : 박 영 규 (인)
----------------------------------------------------------------------------	-----------------------------------------------------------------------